

제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17105 판결 [공사대금청구의소]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171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가단76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김선화

변론 종결 2022. 10. 14.

판결 선고 2022. 11. 11.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가단7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실내장식 공사 전문 개인사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방 등 실내공사 전문 개인사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피고의 형 E가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의 배우자 I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설업체이다.

나. E는 2017. 11. 23. 건축주 F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38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7. 11. 28.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서귀포시 G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H이 시공사가 되어 위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5.경부터 H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와, 2018. 3. 12.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수장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8. 3. 1.부터 2018. 4. 30.까지, 계약금액 4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첫머리 '발주자' 란에는 "D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당사자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DOCUMENT: 이 사건 계약서 당사자란 기재 내용(이미지 생략)

라. 피고는 2018. 3. 20.경 H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E의 처남이자 I의 동생인 N가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수장공사 대금으로 E로부터 2018. 3. 26. 9,800,000원, 2019. 6. 20. 10,000,000원 총 19,8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H과 2019. 1. 23. 이 사건 수장공사의 정산금액을 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H이 원고에게 2019. 2. 23.까지 잔금 32,200,000원(=52,000,000원 -19,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사. H이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H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 4129호(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로 위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9. 2. 위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장공사 하도급 계약에 기한 미지급 대금 3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H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E로부터 '개인 명의로 이 사건 수장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시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위 계약의 하도급인은 E 또는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H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장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서에 발주자로 'D B'이라고 피고의 이름 기재되어 있고, 계약당사자인 '원사업자'란에도 피고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그리고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E 사이에 '이 사건 수장공사는 H이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와 사이에 작성되었으나 사실은 E와 O가 H의 회계처리 상 필요에 의해 개인 명의를 차용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피고를 하도급자로 기재한 것일 뿐이다. H이 이 사건 수장공사 하도급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수장공사를 진행하였고, H 현장소장인 N로부터 수장공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②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가 H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때에 작성된 것이고, 당시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한 D이 건축주 F이나 시공사 H, 원도급인 E로부터 이 사건 수장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수장공사 대금을 E로부터 지급받았고, H과 미지급 대금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관련 사건 판결 확정 후에도 H로부터 미지급 대금을 받지 못하던 중 위 회사가 폐업에 이르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수장공사 내역서 표지에는 'H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9호증(선행소송 갑 제4호증 내역서), 다만 원고는 동일한 내역서를 이 사건 갑 제2호증(공사내역서)으로 제출하면서 위 'H 귀중'이라는 글자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장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종철

판사최석준

판사강미혜